

항목: 학생

발행: 6/26/09

번호: **A-663**

주제: 번역

페이지: 1 중 1

##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일자 교육감 규정 A-663을 대체한다.

본 규정은 영어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참여하고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확립한다.

### 변경 사항:

- 현 뉴욕시 교육청 구조를 반영한다.
- 미성년 학생들이 번역 서비스에 동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교육청 통번역실(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Unit)에서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기타 주요 학교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언어지원 요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 개요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일자 교육감 규정 A-663을 대체한다. 본 규정은 영어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학부모들이<sup>1</sup> 자녀 교육에 참여하고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확립한다.

가정 참여 지원실(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소속 통번역실에서 각 가정과 학부모 리더들의 통번역 지원을 전담한다.

### I. 정의

본 규정에서는 각종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A. 대상 언어(Covered languages)란 교육청에서 지정한 뉴욕시에서 영어 이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9 개 언어를 말한다.
- B. 1 차 언어(Primary language)란 교육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 C. 통역(Interpretation)이란 영어 사용자와 대상 언어 사용자 간에 한 사람의 말이 상대방에게 다른 언어로 전달되어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C. 번역(Translation)이란 영어 사용자와 대상 언어 사용자 간에 한 사람의 글이 상대방에게 다른 언어로 전달되어 문서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E. 언어 지원 서비스(Language assistance services)란 영어와 대상 언어 간의 통역이나 번역을 말한다.

### II. 1차 언어 판단

- A. 각 학교에서는 학생이 등록한지 30 일 이내에(또는 이미 등록한 학생의 경우, 학습담당실(Office of Teaching and Learning)에서 지정한 일자 내에) 학생의 부모가 사용하는 1 차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이 영어가 아닐 경우 부모가 교육청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 B. 학교에서는 각 학생의 1 차 언어에 관한 적절한 최신 기록을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ATS 및 각 학생의 비상연락 카드에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 III.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의 의무

- A. 각 학교와 담당실에서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청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언어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부모들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 B. 교육청에서는 경우에 따라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 C. 학부모는 통역 서비스를 위해 개인적으로 지인이나 친척 등을 대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및 기타 아동(18 세 미만 미성년자)은 학부모나 교직원간에 학생의 학업성취 및/또는 품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그 어떤 비공식/공식 의사소통 석상에서도 통역을 할 수 없다.

<sup>1</sup>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보호자(들),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한다.

#### IV. 학교 별 언어 지원 평가

- A. 각 학교에서는 종합 교육 계획(Comprehensive Educational Plan)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시해 두어야 한다:
1. 본 규정에 입각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각종 언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a. 기존의 인력이나 교육청 통번역실을 이용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문서 번역;
    - b. 부모가 교사, 가이던스 카운셀러, 양호교사 및/또는 기타 교직원과 자녀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요청할 경우, 집단 및 일대일 회의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
    - c. 통번역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결정;
    - d.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 e. 아래섹션VII에 명시된 통보 요건 부합.

#### V. 번역 요건

- A. 교육청 중앙 부서의 주요 문건
1. 교육청 중앙부서에서는 뉴욕시의 모든, 혹은 거의 모든 학부모들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배부될 자녀 교육 관련 문서를 번역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등록, 입학원서 및 학교 선택;
    - b. 학습표준 및 학업 성취( 예, 성적표 등);
    - c. 품행, 안전, 훈육;
    - d.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 e. 전학 및 퇴학.
  2. 교육청 통번역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전담한다: (a) 위에 열거한 주요 문서들을 각 대상 언어로 시기적절하게 번역한다; (b) 각 문서를 작성한 부서들과 협의하여, 번역된 문서가 각 학교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한다.
- B. 학생용 주요 문서
1. 각 학교에서는 1 차 언어가 대상 언어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생과 관련된 주요 문서를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보건 관련 문서;
    - b. 안전 관련 문서;
    - c. 법적 또는 처벌 문제 관련 문서;
    - d.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서나 특수교육, ELL, 또는 기타 대안 학업 프로그램 배정에 관한 문서.
- C. 번역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교육청 통번역실이나 학교 또는 어떤 담당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 언어(들)에 대한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기타 제공 가능한 모든 지원 외에도 반드시 영어로 된 문서 맨 앞에 커버레터나 통지문을 첨부하고 여기에 부모가 무료 통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VI. 통역 서비스

- A. 교육청에서는 통역 서비스에 할당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1차 언어가 대상 언어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이유로 교직원과 의사소통을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정규 근무시간 내에 가능한 모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 B.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이러한 통역 서비스는 학부모가 교직원과 만나는 현장에서 제공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로 통역을 제공한다.
- C. 교육청 통번역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뉴욕시 전체 행사 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교육 정책 패널(Panel for Educational Policy) 회의;
  2. 뉴욕시 ELL 학부모 회의;
  3. 뉴욕시/학군 교육위원회 회의
  4. 기타 교육청 중앙 부서에서 개최하는 뉴욕시 학부모 회의 및 행사.

이와 같은 행사시 제공되는 통역 서비스의 언어는 교육청에서 행사 참가 학부모들의 1차 언어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VII. 통보 요건

- A. 각 학교에서는 대상 언어를 1차 언어로 사용하고 언어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통번역 서비스 요청 권리를 명시한 학부모 권리장전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본 권리장전은 각 대상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이들 번역본은 <http://schools.nyc.gov/RulesPolicies/ParentBillofRights/default.htm>에서 볼 수 있다.
- B. 각 학교와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학부모가 있는 학교의 주요 출입구에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9개 대상 언어로 작성하여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9개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는 <http://schools.nyc.gov/Offices/Translation/TipsandResources/Default.htm>에서 볼 수 있다.
- C. 각 학교의 안전 계획에는 언어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학교장이나 교감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D. 재학생 학부모의 10% 이상이 영어나 9개 대상 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본 규정의 본 항에 의거하여 통번역실에 해당 언어로 된 포스터와 양식을 요청하고 이러한 양식을 학부모들에게 제공한다.
- E. 교육청 웹사이트에서는 학부모의 통번역 서비스 요청 권리 및 이러한 서비스 사용에 관한 안내를 9개 대상 언어로 제공하여야 한다.

## VIII. 언어 지원 서비스 요청 방식

- A. 각 학교 및 교육청 부서에서는 통번역실 웹사이트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본 규정에 명시된 통번역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 B.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관할 학교 담당부서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요청한다.
- C.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문은 통번역실로 문의한다.

IX. 연수

통번역실에서는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기타 언어지원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본 규정에 명시된 언어 지원 요건 및 이러한 요건 충족을 위한 각종 자원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다.

X. 보고 요건

통번역실에서는 본 부서에서 제공한 모든 언어 지원 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 9 개 대상 언어로 번역된 문서의 건수 및 이러한 문서의 일반적인 내용;
-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행사의 건수 및 통역 대상 언어의 수;
- 언어 지원 서비스를 위한 예산;
- 언어 지원 서비스를 위해 고용된 풀타임 교육청 직원의 수;
- 전화로 제공된 통역 건수 및 전화 통역 대상 언어.

XI. 문의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

전화:	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Unit (통번역실)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5-18 Court Square – 2 <sup>nd</sup>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팩스:
718-752-7373		718-752-7390
E-mail: <a href="mailto:translations@schools.nyc.gov">translations@schools.nyc.gov</a>		
<a href="http://www.nyc.gov/schools/offices/translation">http://www.nyc.gov/schools/offices/translation</a>		